



부산세관



수신 부산지방관세사회 귀하

(경유)

제목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

-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 수입신고서 심사 지연을 초래하고, 사후 협정 배제에 따른 추징 등 수출입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신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**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**,
- 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 및 사전 통관단계에서의 오류 치유를 통한 사후 추징 예방**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제3국 송장* 여부 신고 누락(중국, 아세안, 베트남, 인도, 칠레 FTA)

- 원산지증명서(C/O)에 제3국 송장 관련 항목**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,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'협정관세 적용 신청서'에 기재 누락
 - (제3국 송장)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
 - (기재 사항)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, 회사명, 주소

2.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(중국 FTA)

- 중국의 경우 해관·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FTA, APTA, 일반(비특혜 등)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체계가 상이하나 신고인 등이 '협정관세 적용 신청서'에 적절하지 않은 번호 입력

구 분	한중FTA	APTA	비특혜 등
해관 (CUSTOMS)	K+년도(2자리) +일련번호	B+년도(2자리) +일련번호	-
국제무역촉진위원회 (CCPIT)	19+년도(2자리) +일련번호	01+년도(2자리) +일련번호	년도(2자리)+C +일련번호

3.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(EU FTA)

- 한·EU FTA는 물품가격이 6,000유로(€)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나,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,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'협정관세 적용 신청서'에 기재 누락

4.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(EU·영국 FTA)

- 영국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(GB~)로 한·EU FTA 적용 신청하거나,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·영 FTA 적용 신청하는 경우. 끝.